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8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제221438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 (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84조)	2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8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나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본(번호판), 독일(보험표지), 싱가포르(등록표지)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번호판 부착 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관리하기에 앞서 우선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84조)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도지사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장치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5.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u>제69조의5(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번호판 부착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u>

현행	개정안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신설> ⑤·⑥ (생략)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번호판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제6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⑤·⑥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¹⁾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

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

기존에 레저용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국내시장 규모는 2020년 99,350대, 2021년 161,850대, 2022년 222,000대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후 2023년 259,177대, 2024년 219,664대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연 도					
PM 운영대수 (공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970	99,350	161,850	222,000	259,177	219,664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PM 산업협회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보행 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사고 예방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4년 2,232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8년 225건 대비 약 9.9배로 증가하였으며, 총 사상자수(사망자+부상자) 또한 2024년 2,509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0.3배로 증가하였음.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건수	225	447	897	1,735	2,386	2,389	2,232
사상자수 (사망+부상)	242	481	995	1,920	2,710	2,646	2,509
사망자수	4	8	10	19	26	24	23
부상자수	238	473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국토교통부, 경찰청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24년 월평균 민원이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불법 방치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²⁾.

이에 개정안은 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고유

²⁾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주의보’ 발령」, 2025.6.30.

번호를 부여하고,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고유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번호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자동차등록번호판(제10조³⁾)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제49조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4)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륜자동차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조제1항5)은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이륜자동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동차의 종류 >

구분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관리법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배기량 125CC,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배기량 125CC,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도로 교통법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11KW 이하 이륜자동차		125CC, 11KW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소형이륜차, ATV		PM	기타 (전동킥보드 등)	

자료: 국토교통부

- 5)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의 문언, 각 법률의 목적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⁶⁾(법제처 해석례 24-0923, 2025. 2. 28.).

다만, 22대 국회에서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건⁷⁾의 PM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을 PM법 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좌석, 계동장치 등)을 적용받기 어렵고, 각각 별도의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으며, 「도로교통법」의 규정 체계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가 아닌”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7) 홍기원의원 대표발의(2201010), 박성민의원(2201222), 정준호의원(2210310), 황운하의원(2212392), 김은혜의원(2212495),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2213026), 윤준병의원(2213771), 정일영의원(2213974), 정점식의원(2214083), 송석준의원(2214225), 김성원의원(2214255), 한정애의원(2214414)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대여사업의 등록, 식별표지 부착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 안전기준, 관리체계를 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PM법 제정안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종류

- (PM법)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이동 장치로,
 -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및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외견, 이용자 인식, 속도 및 중량 등이 파스형과 유사점이 많아 자전거법에서 함께 규율할 예정

-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행안부령에서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이륜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 (비교 : 파스형 전기자전거)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전거법**에서 규율 중

- ¹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²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³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수단별 적용 법규 체계 >

현행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현행 자전거법	
그 밖의 유사제품*  외륜보드  이륜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동력만으로 움직임 가능 THORTTLE(스로틀) 방식)	파스 전기자전거 (페달+전동기 동시동력 PAS(파스) 방식)
				
↓	↓	↓	↓	↓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정안 의결시 「개인형 이동장치 제정법」		자전거법 규율 예정 ※ 외견, 이용자 인식, 속도 및 중량 등 유사점이 많아 같은 법에서 규율	현행 자전거법

* 바퀴·손잡이 형태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 등으로 분류되나, 속달에 시간이 걸리고, 보행자의 위험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동보드는 PM에서 배제